

제주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6210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39,2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, ‘채무자’는 ‘피고’로 본다, 민사소송법 제257조

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.

판사 김은성

별지